
코로나19와 범죄화

: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후원: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 장소: 온라인(ZOOM), 유튜브



프 로 그 램

시간	내 용	
1부 : 개회		
14:30-14:40 (10분)	사회 및 인사말 :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1부 : 발제 및 토론		
14:40~15:20 (40분)	발제1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발제자 :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발제2	판결 분석을 통한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 - 발제자 :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제3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발제자 : 박한희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5:30~16:10 (40분)	토론1	감염병 범죄화의 문제점 - 토론자 : 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토론2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 - 토론자 :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토론3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다루는 시각과 문제점 - 토론자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4	감염의 범죄화와 추적기술 - 토론자 :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16:10~16:30 (20분)	질의응답	자유 토론

발 제 1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발제자 :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2021. 10. 20.

정제형 변호사

bkl 재단법인 동천

Contents

/

1. 방역조치 위반 처벌의 근거법제
2. 입법동향의 문제점
3. 사법처리 행정동향의 문제점

01

방역조치 위반 처벌의 근거법제

근거법제

구분	법적 근거	주체	요건	적용(처벌) 대상	위반(방해)시 처벌조항	가중 처벌
집합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하는 모든 사람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X
격리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	O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질병관리청장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법 제39조 제3호	X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법 제39조 제3호	
	검역법 제16조 제1항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법 제39조 제4호	X
	검역법 제17조 제1항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법 제39조 제4호	O

근거법제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누구든지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O
	감염병예방법 제29조(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8호	X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감염병예방법 제81조의2(형의 가중)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 [역학조사]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격리조치]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근거 법제 분석]

집합금지	대상 : 모든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조치	대상 : 감염병 의심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
역학조사	대상 : 역학조사 대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이 조직, 계획적으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02

입법동향의 문제점

주요 입법 현황

국회 발의 현황

- 2020년 2월부터 163여 건의 감염병예방법 발의
-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를 직접적, 간접적 원인으로 하는 법률 약 1,000여건
- 감염병예방법은 2020년 3. 4.을 시작으로 총 9차례 개정(기존 1~2년에 한 차례)
- 검역법은 1차례 개정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

- 2020. 3. 4. 개정: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 처벌 가중
- 2020. 8. 12. 개정: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20. 9. 29. 개정: 정보제공요청 권한 확대
- 2021. 3. 8. 개정: 가중처벌조항 도입

사법처리 근거법제 개정 경
향

권한행사의 주체 확대

- 행정주체 :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
- 권한행사를 위한 요건이 폭넓게 규정됨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재 대상의 확대

- 감염병의심자의 개념 신설하여 강제처분, 방역조치, 강제조치의 대상(감염병 환자 등 → 감염병 의심자)

cf. "감염병 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재의 전제가 되는 강제처분조치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수가 확대
- 자가격리,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이동수단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여부검사

사법처리 근거법제 개정 경
향

제재 대상 행위 확대

거짓정보 유포, 전파매개행위, 역학조사 정보제공 회피행위, 정보제공 거부행위, 진단검사 불응행위 등 처벌

가중처벌 도입

- 역학조사, 격리조치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 단체 등이 조직, 계획적으로 위반한 경우

구상권 청구 도입

- 고의, 중과실에 대한 구상권(3배)

처벌수준 상향

- 집회금지에 대한 처벌 상향: 300만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집합금지에 대한 처벌 상향: 300만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입법동향의 문제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와 형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식
- 논란이 되었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차원
- 감염병 대응 전반에 있어 과잉형벌화의 우려
- 전파매개 등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낙인화 초래
-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의 우려
- 처벌조항 완화 또는 예외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

03

사법처리 행정동향의 문제점

03 사법처리 행정동향의 문제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 향

- ㉠ 검사·확진 → ㉡ 역학·추적 → ㉢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학조사 및 관리 체계를 구성
- 지침, 고시, 공고,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다양한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시행함
- 행정명령상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됨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 검사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형태의 집회 금지
- 특정 인원의 집합 제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
향

- ㉠ 검사·확진 → ㉡ 역학·추적 → ㉢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학조사 및 관리 체계를 구성
- 지침, 고시, 공고,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다양한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시행함
- 행정명령상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됨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 검사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형태의 집회 금지
- 특정 인원의 집합 제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사법처리 행정동향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적용"
-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2021)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

- ① 무관용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②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 ③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④ 지자체 처분 및 조치실적 관리 강화
- 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홍보 강화

수사 및 기소 현황

- 높은 송치율: 83.7% (경찰)

구분	합계	각리초치위반	집합금지위반	역학조사방해	기타업권시행
수사종결	4,309	1,278	2,669	224	138
송치율	83.7%	92.3%	83.6%	61.2%	42%
보송치율	16.3%	7.7%	16.5%	38.9%	58%

- 2021년 1~4월에 수사대상자가 대폭 증가 (경찰)
- 구공판 비율이 43.7% (통상 24~29%) (검찰)
- 기소/불기소 비율: 39.8%(통상 29~34%) (검찰)

수사 및 기소 현황

경찰

- 검사 대상자 소재 확인, 보건당국 역할 조사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사법처리 등 업무 담당
- 업정 대응 원칙 :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
(▲감염 위험성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 이달 여부 ▲자가 복귀 명령 불응 여부 ▲공무원의 행정 행위 방해 여부)

대검찰청

- 구공판 원칙,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법정최고형 구형

정부

감염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 구상권 청구 결정

악의적 방역행위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발표

법무부 : 관련 사건 처리 기준 강화

(재판에서 실행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하고 처리기준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

보건복지부 :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과태료 신설 추진

행정동향의 문제점

- 정부와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 수사, 엄정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
- 실제로 구공판 비율, 기소율이 높게 나타남 : 심리적 부담 가중되는 피의자 증가
- 구속수사 원칙의 선포 :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함
- 일괄 엄정대응 시 범죄의 중대성 여부 미고려 : 과잉범죄화의 우려
- 강력처벌을 방역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
- 공동체에 감시와 불안을 초래 : 감염병환자와 감염가능성 있는 사람을 죄악시 하는 분위기 조성

발 제 2

판결 분석을 통한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

- 발제자 :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CONTENTS

0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 행정 동향의 문제점

02. 수사 및 기소 현황과 문제점

- 수사 및 기소 현황
-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03.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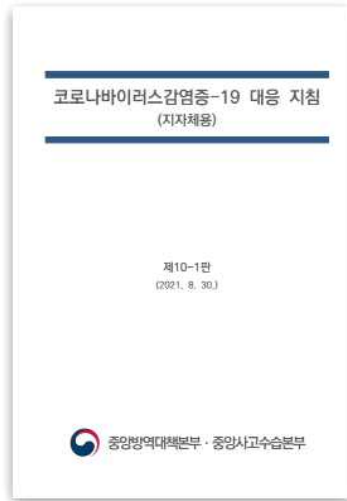
- 법원 판결 통계
- 주요 판례 분석
- 법원 판결의 문제점

0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 행정 동향의 문제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향과 문제점



- 2019. 1. 2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기초하여 역학조사,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집행하고 있음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고시, 공고, 행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수립·집행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와 같이 지침에 기초하거나 고시, 공고,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역학조사,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제1항 상의 조치로 평가되어 관련 처벌규정과 연계되고 있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공법위헌 재량권의 행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집합조치, 격리조치, 역학조사의 요

조치	법적 근거	주체	요건
입원고지	감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호	지방자치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청장	감염병예방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감염법 제16조 제1항		
	감염법 제17조 제1항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항	지방자치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역사가 불분명하나 발생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20조(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 감염병예방법은 추상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법위헌 재량을 허용하고 있음
- 특정 진단을 선별하여 진단검사를 명령하여 차별을 초래하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제약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형태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의 인원수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
- 특정 인원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당히 이루어지는 격리조치로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제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 중앙재난대책본부 2020. 3. 26.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킬 것"
- 법무부 및 총집안전부는 2020. 8. 21.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
- 정부는 2021. 4. 2.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저변 권고안' 발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행정 동향의 문제점

행정 동향의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의 광범위한 재량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험성

무관용 원칙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법처리할 위험성

과잉행벌과 낙인찍기

기본권 침해 및 자법의 위험성

02.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 수사 및 기소 현황
-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수사 및 기소현황

<표 .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21.4.30.기준)>

(단위명)

구분		합계	격리조치위반	집합금지위반	역학조사방해	기타위반사항
합계		5,734	1,463	3,877	251	143
종결	송치	3,605 (구속 17)	1,180 (구속 9)	2,230	137 (구속 6)	58 (구속 2)
	불송치 등	704	98	439	87	80
수사중		1,425	185	1,208	27	5

(자료 출처: 이탄희 의원/경찰청)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수사 및 기소현황

<표 .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송치 / 불송치 비율>

구분	합계	격리조치위반	집합금지위반	역학조사방해	기타위반사항
수사 총결	4,309	1,278	2,669	224	138
송치율	83.7%	92.3%	83.6%	61.2%	42%
불송치율	16.3%	7.7%	16.5%	38.9%	58%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수사 및 기소현황

<표 .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분					
		처분계	구공판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7,724	6,896	13	1,185	1,546	2,862	1,290
서울중앙지법검찰청	1,673	1,331	0	30	208	720	373
서울동부지법검찰청	440	428	1	11	122	143	151
서울남부지법검찰청	285	255	0	112	68	67	8
서울북부지법검찰청	288	268	0	29	111	89	39
서울서부지법검찰청	165	148	1	6	65	46	30
의정부지법검찰청	434	421	2	44	86	199	90
인천지법검찰청	861	766	2	196	112	361	95
춘천지법검찰청	103	96	0	36	17	33	10
수원지법검찰청	1,283	1,137	0	181	312	474	170
대전지법검찰청	334	325	0	142	54	79	50
청주지법검찰청	145	125	0	14	43	52	16
대구지법검찰청	356	348	5	66	120	106	51
부산지법검찰청	434	421	1	92	111	117	100
울산지법검찰청	107	85	0	28	25	11	21
창원지법검찰청	141	127	0	52	33	24	18
광주지법검찰청	494	448	1	130	11	261	45
전주지법검찰청	102	105	0	3	21	65	16
제주지법검찰청	79	62	0	13	27	15	7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보완수사요구
(자료 출처: 이탄희 의원/법무부)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수사 및 기소현황

<표 .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총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비율	구약식	구약식 비율	
5,606	2,744	13	1,185	43.7%	1,546	56.3%	2,862

<표 .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불기소 비율>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6,896	2,744	39.8%	2,862	41.5%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수사 및 기소현황과 문제점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대응

- 구공판, 기소율 증가
- 불구속수사권적 위반

엄정대응과 과잉범죄화

- 엄격한 대응으로 도리어 범죄와 범죄자 양산
- 강력처벌만이 유일한 방역수단으로 자리매김

감시와 불안의 공동체

- 감염병 환자과 감염 가능성을 파악시
- 협력과 존중의 대상인 시민을 처벌대상으로 간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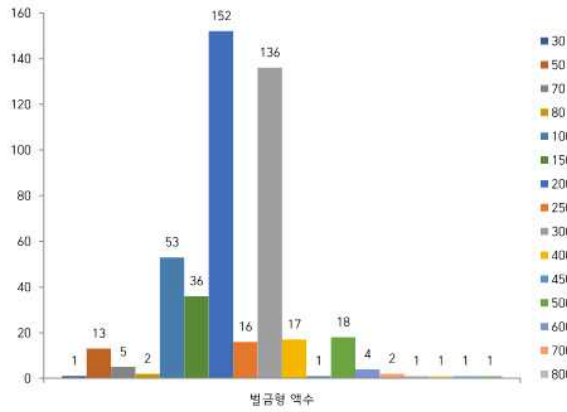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 법원 판결 통계
- 주요 판례 분석
- 법원 판결의 문제점

법원 판결액액 및 제정

법원 판결액액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형 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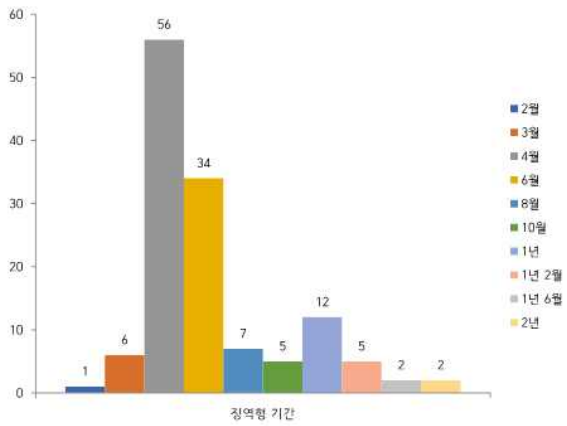


-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벌금 선고는 전체 566건 중 439건임.
-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 원, 벌금형 최고 액수는 1,500만 원, 최저 액수는 30만 원임.
- 벌금액 평균이 200만 원으로 일반 형사 사건의 벌금액에 비해서도 과도한 편임. 또한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있어 벌금액의 절대액 자체가 높은 편임.

법원 판결액액 및 제정

법원 판결액액

<감염병예방법 위반 징역형 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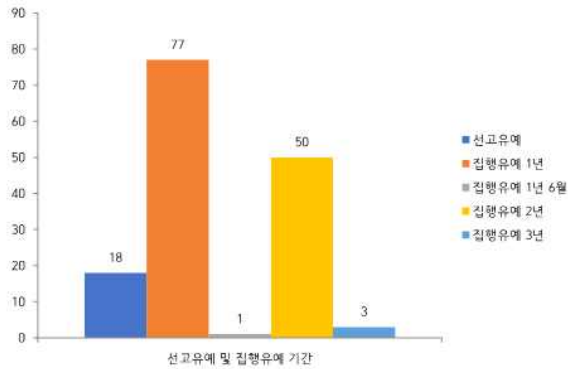


-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벌금 선고는 전체 566건 중 126건임.
- 징역형의 중간값은 6.5월, 징역형 최고는 2년, 최저는 2월임.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법원 판결 통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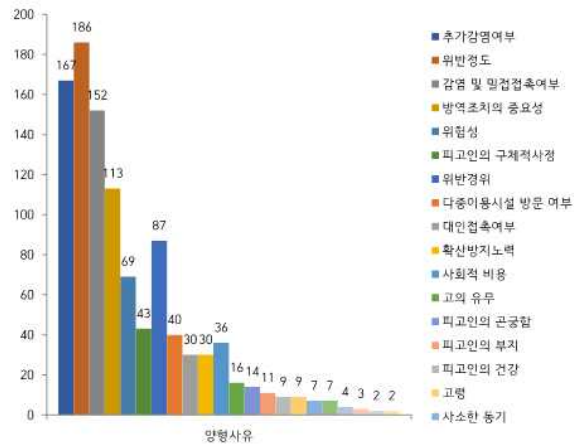


- 선고유예는 14건에 불과함.
- 집행유예 1년(77명), 집행유예 1년 6월(1명), 집행유예 2년(50명), 집행유예 3년(3명)임.
- 벌금형에 집행유예 부가한 경우는 29건, 선고유예 부가한 경우는 12건임.
- 분석 대상 판결 566건 중에서 벌금형이 439건으로 약 78%, 징역형은 126건으로 약 22% 정도임. 그 중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은 135건으로 약 23%임. 무죄는 전체 중 단 1건 밖에 없음.
- 선고유예와 무죄를 제외하면 551건으로 97% 이상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음. 사실상 가소된 피고인들의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법원 판결 통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양형사유 통계>



- 상당수 판례가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 상황을 '미증유의 사태', '전 세계적 유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적 노력 투입' 등으로 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을 '전 국가적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평가함.
- 167건의 판례가 '추가감염 여부'를 양형사유로 판단함. 이 중 실제로 추가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3건임. 피고인 '감염 및 밀접접촉여부'를 양형사유로 판단한 경우도 152건에 달함. 이 중 피고인이 양성인 경우는 11건임.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결 대략

1. 동일한 사실관계로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기소되었으나 사법부가 자의적 법령 적용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7145 판결**
- 피고인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되었으나 샌드위치 패널로 폐쇄된 임시생활시설 하단에 구멍을 파서 시설 밖으로 나가며 격리조치를 위반함.
- 피고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기소되었음. 이와 같은 법령적용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유사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례적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세 개의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결 대략

2. 이탈 시간, 거리 등 위반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평균 이상의 벌금형 혹은 실형을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4040 판결**
- 피고인이 9분 간 격리 장소를 벗어나 20미터 떨어진 화단으로 이동
- 벌금 300만 원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5187 판결**
- 1회 20분, 2회 14분 이탈
- 벌금 600만 원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례 분석

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1) : 가족의 임종, 위독한 가족의 병구완, 가족의 약을 전달하기 위한 경우 등

- **창원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77 판결**
- 피고인은 국외에서 일을 하던 도중 부친이 낙상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국외에서 생활하는 등 부친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득이하게 귀국함
- 피고인은 혼수상태에 빠진 부친을 만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어서 부친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면서 1시간가량 격리조치를 위반함.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스스로 해외귀국 자임을 밝힘
- 이에 법원은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실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례 분석

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2) : 피고인 자신의 질병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자가격리 장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탈한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1고단119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해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이 격리 중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법원 판결 관행 및 문제점

주요 판결 대략

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범죄피해 신고, 확인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탈한 경우

- **울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5429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울산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3628이 적지 않은 금액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후 40분간 지구대에 방문한 뒤 바로 귀가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임

법원 판결 관행 및 문제점

주요 판결 대략

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행정청으로부터 구호물품(식료품, 생필품 등)을 적절하게 지원받지 못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072 판결**
-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함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10시간가량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총 4회 위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례 분석

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생계와 직결된 사유 때문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1276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하도록 통지 받았으나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에게 출근을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출근함
- 법원은 벌금 200만 원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6771 판결

- 피고인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25분간 이탈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례 분석

4.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행정청의 지원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처벌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109 판결

- 피고인이 분리불안, 정신병적 증상 있는 조증 있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 조차 기억 못 함.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건 직후 자진해서 피고인의 이탈을 신고한 뒤 피고인을 찾아 집으로 데려옴
-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례 분석

5. 행정법상 기본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실수 등으로 피고인이 오인, 착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나,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6773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전화로 통보받고 통지서를 교부 받기 전에는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생계 목적으로도 정공사를 하느라 격리조치를 위반함
-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시대에 국가, 지자체, 국민이 모두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 행위"라고 설시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례 분석

6.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음성 판정 통보받고 이탈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실형을 선고함

- 광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833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탈함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결 내역

7.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다름

-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6660 판결**
 - 피고인이 1시간가량 운전을 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 이탈 시간이 길지 않다고 평가하며 벌금 150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17. 2020고단2198 판결**
 -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택배를 보내러 우체국에 갔다가 자가격리조치 위반
 - 위반 시간도 한 시간에 불과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였다고 실시했음에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함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판결 내역

8.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피고인의 소극적 부인까지 적극적 방해로 판단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1940, 2020고단3472(병합) 판결**
 -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동 경로를 진술할 당시에는 다중모임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구두로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구두 통지 당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다고 평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 위치값,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정정한 것을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관 등 보건당당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킨 것'이라고 평가함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이는 같은 기간 선고된 벌금형 중 최고액수임

판결판례의 문제점

행정처분 결정의 불이행

- 행정처분 결정에 불이행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소송의 목적에 위반

일관되지 않은 법원 적용

- 해외입국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당국이 유사한 예도, 법정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음
-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감염병 유행 시 진파 막기 위해 격리조치)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 위해 격리조치) 두 법조항이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고의와 책임 등 구성요건을 엄밀히 판단하지 않음

-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들

양형 문제

- 양형 기준 적용이나, 판단이 일관되지 않음
- 추가감염 여부나 방역조치 위반의 위중성 등의 양형사유는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함.

행정처분의 타당성

-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침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감사합니다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발제자 : 박한희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코로나19와 범죄화 :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감염병, 형사처벌, 국제인권규범

감염병 상황과 국제인권규범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조항의 규제 및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CCPR)

공중 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을 간섭하는 일은 최후의 방편**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간섭은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법률에 명시될 것
- ② 합당한 일반이익 목표(legitimate objective of general interest)를 위해 이루어질 것
- ③ 민주사회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한일 것
- ④ 최소한도의 침해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
- ⑤ 자의적이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할 것
- ⑥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며 검토 가능할 것.

감염병 상황과 국제인권규범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코로나19 지침 (Covid-19 Guidance)

- 국제법은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평가된 위험과 필요성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간이 정해져야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정부는 비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게 어떠한 경우에 얼마나 그 영향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이러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 가능한 정부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장**해야 하고 무제한적으로 일상의 삶을 규율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의 원칙

6

- 유엔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 유엔에이즈, 인터폴, 유럽평의회, 미주인권재판소 등 국제 및 지역인권기구들은 공통적으로 형사처벌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이야기
- ① 형사처벌은 어디까지나 다른 제재수단이 없을 때의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 ② 범죄화는 오히려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도록 만들으로써 방역에 해가 될 수 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③ 처벌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④ 처벌의 강도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형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 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형사처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

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지침

- 국가는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할 때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며 예외적인 조치를 인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벌금**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벌금액을 정할 때는 **성별에 따른 영향이나 긴급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의 상황**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봉쇄조치가 시행되든지, 그 어느 누구도 **홀리스이거나 적절하지 않는 주거에 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여성들이) 폭력을 신고하거나 피하려고 봉쇄 조치를 어길 때는 **처벌에서 면제돼야 한다**

해외 사례

7

영국

- 「The 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strictions) (Steps)(England) Regulations 2021」에 따라 집합금지, 의무격리 및 검사 등 공중보건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였으나, **벌금형만을 규정. 경범죄로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지도 않음**

일본

-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 입원거부 시 50만엔, 역학조사 거부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30만엔의 과태료 부과

독일

- 독일 바이마르법원, 집합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감염을 막기 위한 일반 접촉 금지는 국가가 모든 시민을 제3자에 대한 건강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것"

사법처리 현황 문제점

8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정정도의 의무가 부과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아무리 감염병 상황에서의 방역조치라 할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됨
- 특히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함
- 사회적 소수자가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 등도 확인됨. 이러한 사례는 형사적 제제가 차별적이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됨

국회, 수사기관,
정부에 대한 제언

개선과제

10

국회에 대한 제언

- 전파매개행위 처벌, 거짓사실 유포 처벌 등 명백히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입 개정안 발의 중단
-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감염병의심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재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가중처벌조항의 삭제
- 역학조사방해행위 중 소극적 진술 등이 처벌되어서는 안되고, 형량의 완화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
 - => 보충성, 비례성, 필요성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
 - => 적법절차의 원칙, 인도주의적 접근방식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의무조항 개선

개선과제

11

수사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제언

- 구속수사 원칙,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벌주의적 기조 철회
- 피의자의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 수사단계부터 고려 필요
- 구성요건에 대한 엄밀한 판단 및 양형에 있어 개인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안내하여야 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언

- 무관용 원칙 등 엄벌주의 기조 철회
- 낙인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 마련
- 적법한 절차 준수 및 충분한 생활지원
- 행정명령 등에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 준수



감사합니다

감염병 범죄화의 문제점

- 토론자 : 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감염병 범죄화의 문제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소주

감염병,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대표적인 악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감염병 범죄화는 효과적인 예방을 가로막는다.

질병/감염병/감염인에 대한 범죄화는 예방을 저해한다. 치료와 조기테스트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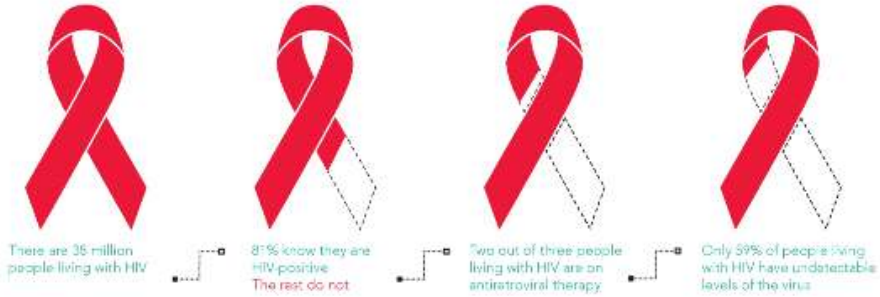
UNAIDS 90-90-90 target

27 January 2017

In 2014, UNAIDS set out new targets for reducing HIV by 2020.



90-90-90: Treatment for all



90-90-90 HIV treatment targets

30 million people on treatment by 2020

90% of people living with HIV know their status

90% of people who know their HIV-positive status are on antiretroviral therapy

90% of people on antiretroviral therapy are virally suppressed

예방의 주체인 감염인을 지운다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의 주체로서의 감염인은 이야기 하지 않는 사회

U=U

HIV가 검출되지 않는 감염인은
(Undetectable)
파트너에게 HIV를 감염시키지 않는다
(Untransmittable)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사람’을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 인권침해, 낙인, 차별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고

‘못된 질병’과 그 질병을 전파하는 ‘가해자’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범죄화



피/가해 구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지키려면

감염성 질환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지 않기가 가능하려면

감염성 질환을 넘어,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공존하려면

But,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을 또 만들어내려는 국회 움직임 >> 감염병 대응 전반에 있어 과잉형벌화의 우려



우리가 사용하는 구호와 슬로건

“HIV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 “긍정하라: POSITIVE”



토론2

형별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

- 토론자 :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감염병에서 형별의 보건학적 효과

최홍조, MD, PhD
시민건강연구소



두 가지 서로 다른 쟁점으로부터의 오해

- (법률로써) 역학조사를 위한 권한이 강화되지 않으면, 감염병 대응활동(방역활동) 수행이 어렵다.
- (법률로써) 역학조사 방해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감염병 대응활동(방역활동) 수행이 어렵다.

메르스로부터의 기억 - 역학조사관의 책임과 권한 문제

감사결과보고서

-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

2016. 1.

감사원

-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 초동역학조사 부적정(징계)
 -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징계)
-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조치
 - 역학조사 업무 부적정(징계)
 - 접촉자 파악 및 관리업무 부적정(징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담당자들의 메르스 위기대응 인식과 경험 탐색

이수경¹, 이광수², 조성필³****

¹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위생, ²한국건강증진개발원, ³서울대학교 보건행정연구소

- “그걸 갖다가 징계를 주고 하면은요 다음에 메르스 오면 아무도 안 합니다. 감염병 사태 아무도 안 합니다. ...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도 현장에 나서서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감사 받을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제일 상책이거든”
- “내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안 해서 메르스가 퍼지게 되면은 제가 책임을 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아무 권한도 없고, 권한이 있는 역학 조사관은 통화도 안 되고,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 “작년에 메르스 때 전화가 엄청 오잖아요. 자기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환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담당관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감염병예방법 개정 (2015.7.6)

- 역학조사 방해행위 구체적으로 나열 --> 역학조사 방해 처벌규정 신설(감염병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공개 의무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관의 정보요청권한 명시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보, 의료법에 따른 의무기록, 출입국기록,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경찰법에 따라 정보 요청 가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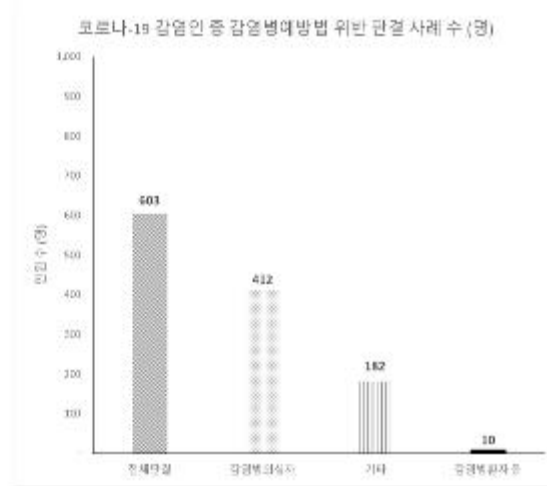
※ 감염병의심자, 자가격리위반 등 처벌 규정은

2020년 3월 개정

(역학조사 활동 보장을 위한 처벌의 정당성 왜곡 혹은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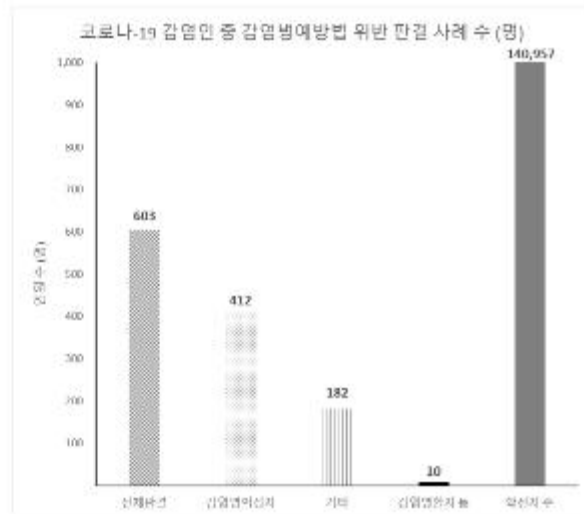
판결 사례별 분포

- 전체 판결 건수:
535건 (초심만 포함)
- 전체 판결 대상자 수:
603명
- 감염병의심자: 412명
- 감염병환자: 10명
- 기타: 182명



역학조사 방해: 감염병환자 등

- 전체 확진자
수 (2021.6.1.0시
기준)
• 140,957명
- 역학조사 방해
판결 사례 수
• 10명 (약 0.0%)



오래된 호흡기 감염병, 결핵과 처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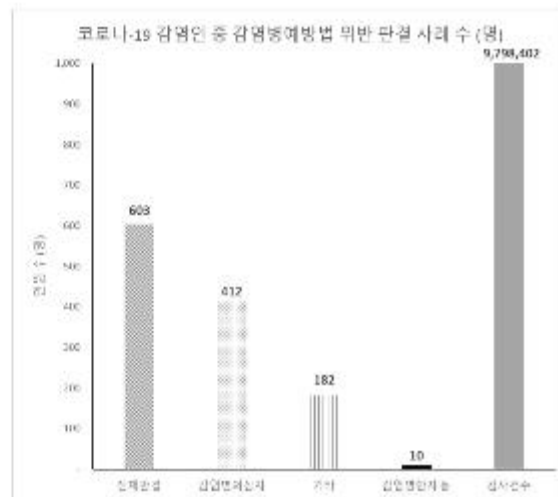
유형/국가	법적 근거				
	선언검사	정기진단	예방접종	강제치료	강제격리
권위주의적	○	○	○	○	○
모범	러시아	○	○	○	○
	에스토니아	X	○	○	○
	스위스	○	○	X	○
	노르웨이	○	○	X	○
중등도규제	영국	○	○	X	X
	독일	X	○	X	X
	이스라엘	X	X	X	X
	체코	X	X	○	○
	헝가리	○	X	○	○
	폴란드	X	X	○	○
	핀란드	○	X	X	○
	프랑스	X	X	○	X
예방적 모델	네덜란드	○	○	X	X
	스페인	X	X	X	X

출처: 고커 등, 2007 (1)

- 강제적 조치, 법원의 권한
- 한국의 강제적 조치, 지방정부의 권한

자가격리 위반: 접촉자 등 감염병 의심자

- 검사 건수
 - 자가격리 대상자 수는 확인 불가
 - 검사 건수는 검사 사례 수와 동일하지 않고, 감염병의심자 외에도 다수 포함됨 고려
- 검사 건수 대비 자가격리위반 판결 사례
 - 412명 (검사 수 대비 약 0.0%)



영국 사례

- 1984년 공중보건법 개정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명령이 법제화됨.
- 1994년부터 1999년, 6년간 총 29사례의 격리명령이 내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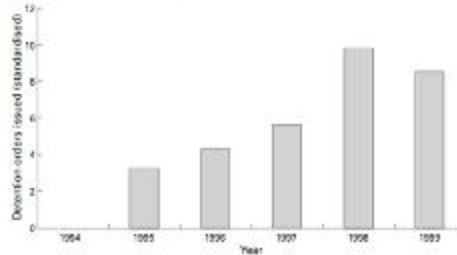


Figure 1 Section 28 detention orders controlled by pulmonary tuberculosis notification rate and health authority response rate in England and Wales, 1994-9

(코커, 2001)

강제격리의 보건학적 효과

- 1990년대 중반 뉴욕시의 결핵 유행에 대한 연구 결과, 유병률 감소에 기여한 정책이 격리명령과 같은 “법적규제”의 효과인지, 직접복약확인과의 같은 정책방향의 전환에 의한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음. 즉, 격리명령이 유병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음 (코커, 2003)

결론

- 역학조사 활동의 보장은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
- 역학조사 권한의 보호를 우선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
- 하지만,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그 본연의 목적(역학조사 활동 보장 혹은 권한 보장)을 분명하게 넘어서고 있다.
- 동시에, 호흡기 감염병에서 강제적 조치가 방역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다루는 시각과 문제점

- 토론자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다루는 시각과 문제점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 전제해야 하는 코로나19 초반 언론보도의 실패
 -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 부추김 보도
 - 방역지침 위반 격리자들에 대한 나열식 보도
 - 확진자에 대한 낙인 보도
 - 집회시위 등 인권보도 실종

1. 언론이 ‘방역지침’을 바라보는 시각

1) 중앙일간지 방역지침 관련 사설 및 칼럼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 시점
경향신문	[사설]코로나 자기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에 엄정 대응해야	2020.03.30
	[사설]"한국은 방역 챔피언", 자기격리자도 수칙 지키라	2020.04.07
서울신문	[열린세상] 맞짱을 뜨다	2020.05.29
	[사설] '방역 비협조' 구상권 행사 타당하다	2020.08.20
	[사설] 방역수칙 위반, 국민은 엄벌 공직자는 숨방망이러니	2021.10.11
중앙일보	[사설] 공공부문만 거리두기 강화하는 근거가 뭔가	2021.04.27
한겨레	[사설] 자기격리자들의 자제와 엄격한 관리 절실하다	2020.04.05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국인에게는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향신문-

“일부에서는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외 유입 확진자의 91.7%는 우리 국민이다. 이들의 귀국을 막을 수는 없다...(중략) ...입국자 전원에게 실시되는 **자가격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겨레-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국민 대다수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감염을 확산한 시설과 위반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서울신문-

2) 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 관련 보도

보도제목	보도시점
"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경찰 고발은 상황보고 판단"	2020.02.14
자가격리 중이던 광주 신천지 교인 거주지 한때 이탈(종합)	2020.02.27
전국 곳곳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방역망 구멍...확산 부채질 우려	2020.02.29
자가격리 기간 여행,특강,홍보...국립발레단의 도념은 '이탈'(종합)	2020.03.05
자가격리 기간 연락 없이 병원 간 포항 신천지 교인	2020.03.09
병원 무단이탈 80대 확진자 택시 타고 집으로...재임원 조치	2020.03.11
경남도, 대구시에 자가격리 중 이탈한 20대 고발 요청	2020.03.12
미국 다녀온 21세 남성 확진...검사받고도 신촌 등에서 활동	2020.03.26
법무부, 자가격리 권고 무시한 영국인 조사 착수...강제추방 검토	2020.03.29
태국서 온 확진자, 자가격리 어기고 카페·PC방 방문	2020.03.29
제주도, 자가격리 무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고발	2020.03.30
'굴 채취하려고'...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태안 거주 70대 고발	2020.03.30
자가격리조치 어기고 외출한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고발	2020.03.30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0대 고발	2020.03.31
자가격리 중 서울시내 돌아다닌 30대 불구속기소	2020.04.01
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2020.04.02

3) 방송뉴스 '자가격리' 위반자 관련 보도



4) 언론이 주목한 해외 방역지침 위반 및 처벌 사례들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시점
경향신문	구타·표백제 살포...코로나 잡으려다 인권 잡네	2020.04.02
서울신문	코로나 통금 어기면 살해... 콜롬비아 '살벌 방역'	2020.07.17
조선일보	세르비아 축구 스타 요비치, 코로나 때문에 징역형 위기?	2020.03.21
중앙일보	[신경전의 차이나는차이나] 14억 조이는 中, 바닥부터 디지털 '풀뿌리 감시망'	2021.10.11
KBS	美 예배 강행 목사 체포·벌금...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단속 강화	2020.04.03
SBS	미국서 '사회적 거리두기' 갈등 심화... 폭행 살인으로 번져	2020.04.09
	'통금 어기면 살해'... 콜롬비아 무장단체의 살벌한 코로나 방역	2020.07.16
TV조선	"美 6주 신생아 최연소 사망"... '집회금지 위반' 혼주 기소	2020.04.02
	[포커스] 유럽서 번지는 反마스크 시위... 방역 걸림돌 되나	2020.08.31
	美 플로리다 주지사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자 모두 사면"	2021.05.14
MBN	미 대형교회 목사, 예배 강행했다가 체포... 홍콩선 자가 격리 위반자에 3개월 징역형	2020.03.31
	미국, '사회적 거리두기' 갈등 '부글부글'... 폭행 살인도	2020.04.09
	'통금 어기면 살해'... 콜롬비아 무장단체의 살벌한 코로나19 방역	2020.07.16
	과학적 증거 부족하던 영국, 이제서야 얼굴가리개 착용 권고	2021.01.03
	미 CDC, 대중교통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형사 처벌도'	2021.01.30
오마이뉴스	말레이시아 엘리베이터 속 빨간 테이프, 그 정체가	2020.04.06

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가닥... ‘무단이탈’ 강력차단

“자가격리자는 총 3만7천248명이다. 이 중 약 3만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 자가격리 위반자 비율...0.348%

2. 방역지침 강화와 인권보호 쟁점, 안심밴드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 시점
경향신문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동의 때만 착용” 안심밴드 실효성 있나	2020.04.12
한국일보	‘인권침해 vs 적극적 조치 필요’... 자가격리 손목밴드 논란	2020.04.08
	[기외] 안심밴드가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	2020.04.15
KBS	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27일부터 시행... “착용 거부하면 시설 격리”	2020.04.24
MBC	자가격리 위반하면 안심밴드... 동의 안 하면?	2020.04.11
	자가격리 위반 시 안심밴드... 강제성 없어	2020.04.12
	손목시계 같은 안심밴드... 거부하면 격리 시설로	2020.04.27
SBS	안심밴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 본인 동의 없이 착용 못 시켜	2020.04.11
	자가격리 어기면 손목에 안심밴드... 제한적 도입	2020.04.11
	동의 없으면 못 채우는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	2020.04.12
TV조선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미동의 시 시설 격리	2020.04.24
JTBC	자가격리 위반자, 내주부터 손목밴드... 거부 시 시설 격리	2020.04.24
채널A	격리 위반자 동의하면 ‘안심밴드’ 착용?... 실효성 논란	2020.04.11
오마이뉴스	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방역당국 고민 깊어진다	2020.04.06

3. 언론이 방역지침 위반자를 바라보는 시각



(사진: 연합뉴스)

=> 2020년 4월 14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구속

1)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구속자가 나온 날 언론보도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시점
경향신문	자가격리 위반하고 사우나음식점 간 60대 남성 첫 구속	2020.04.14
동아일보	경찰 "정도 심한 격리위반자 구속" 2차례 이탈 60대 첫 영장 신청	2020.04.14
	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	2020.04.15
한겨레	자가격리 무단이탈 60대 남성 첫 구속	2020.04.14
KBS	격리지 이탈 하루 2번 사우나 간 60대 영장 신청·격리위반자 최초	2020.04.13
	자가격리 지침 하루 2차례 위반해 사우나 간 60대 첫 구속	2020.04.14
SBS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간 60대 남성	2020.04.14
MBN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자 첫 구속	2020.04.14

=> 단순 전달하는 데 집중된 보도

2)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단순전달'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시점
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 후 복무지침 위반...대구시, 공무원 8명 징계위 회부	2020.05.28
한국일보	[단독] 코로나 지침 위반 과태료, '10만원→20만원' 올릴 듯	2021.02.24
KBS	[팩트체크K] '자가격리 중 가족과 식사'...처벌 얼마나 강화될까?	2020.02.14
MBC	경찰, 귀국 후 자가격리 명령 어기고 무단외출한 20대 입건	2020.04.07
SBS	역학조사 거부하거나 방역정책 방해 시 구속수사	2020.06.09
TV조선	경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11명 무더기 검찰 송치	2020.07.14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시점
조선일보	"5명 모였네" 찰카... 코파라치 신고 한달새 2만5000건	2020.12.30
KBS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고에 50만 원 포상금...안전신문고에 18만 건 접수	2020.09.13

4. 방역지침 위반자 그리고 언론, 놓친 것

〈언론의 방역지침 위반자를 보는 시각〉

- 코로나19 확산세에서 '격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 방역지침 위반자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
- '엄중처벌', '일벌백계'해야 할 대상
=> 대중의 일반적인 방역지침 위반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기대는 쉬운 선택의 보도

〈언론보도에서 빠진 것〉

- '기자'들의 당연한 책무인 질문하지 않은 것
 - 방역지침은 그 자체로 옳은가(국제인권기준 등)
 - 방역지침 강화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
 - 방역지침 위반자들의 처벌은 기양형기준에 합당한가
 - 방역지침 위반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감염의 범죄화와 추적기술

- 토론자 :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감염의 범죄화와
추적 기술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코로나 위기가 인권의 위기로

- ❖ 유엔인권최고대표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2021. 9.)
 - AI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검토 중 코로나19 위기 속에 확대된 AI 기술의 인권 문제를 일부 포함.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인권 전반에 위협 경고.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요구함.
 - 코로나19 상황과 AI 기술의 인권 위협 사례
 - 위치정보, 신용카드, 교통 시스템, 건강 및 인구통계학, 개인관계망 등 여러 유형의 정보를 이용한 접촉추적 및 AI 시스템이 개인을 잠재적으로 감염되거나 감염될 수 있는 사람으로 표시하고, 격리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기반으로 사용됨
 - 코로나19 위기로 AI 성적 예측이 공립학교와 가난한 지역 학생을 차별함
 - 코로나19 위험 진단과 예측용 의료 AI 수백 개가 임상 부적합으로 분석되는 등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고용 상황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수집하고, 재택 환경에서 직장 감시가 가정으로 확대됨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2020)



심층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2021 질청)

II 사업 내용 II IV Y W

1. 서비스 내용



☑ 범부처 데이터 연계 및 분석 기반 심층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요



지능형 역학시스템 (2021 부천시)



지능형 역학시스템 (2021 부천시)

[부록] 접촉자 신원확보 방안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기반으로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 후, CCTV 영상 AI 검색을 통하여 밀접 접촉자 탐색



CCTV 영상으로 파악된 접촉자의 이동경로를 탐색하고, 기지국 접촉자 교차검색을 이용하여 신원(전화번호) 확인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빠르고 정확한 접촉자 탐색

지능형 역학시스템 (2021 부천시)

- 실 CCTV 영상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셋 구축
 - 다양한 AI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알고리즘 검증에 위한 데이터 부족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실험실 환경에서의 성능과 많은 차이가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CCTV 영상 및 실제 데이터셋 수집을 통해 어노테이션/라벨링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고도화를 수행하고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국내 AI기술, AI기업, AI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오픈
 - 역학조사시스템(EISS) 및 AI기술, AI기업, AI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데이터 제공할 수 있도록 Open API개발

인권 위기의 기술적 구조



인권적 통제보다 합리화를 위한 법률

- ❖ 필요성만 취하는 감염병법 개정
 - 동선공개 조항(제34조의2) 개선에도 불구하고
 -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에 대한 숙려 부족
 - 기본권 제한 확대에 비례하는 통제 장치 도입 전무
 - 개정 과정에서 인권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검토 부재
 - 개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 부재
-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 기지국접속정보 대규모 수집과 집회참가자 추적
 - 확진자(및 의심자)에 대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 ❖ 감염병의 개인화, 낙인화, 범죄화, 취약계층 불평등 악화

법령개정 (심층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 법제도 정비 실적

시스템 연계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5에 따른 연계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번호	법령분류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사유	개정일자
1	대통령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의 3	질병관리청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5.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7.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9.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2020. 12. 29

법령개정 (지능형 역학시스템)

법·제도 검토 및 개정(안)

법·제도 검토

- 「감염예방법」 제76조 2,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8조의 2
- 「위치정보법」 제15조
- 행안부 질의 및 회신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1항에 따라 과학적 연구, 공약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개인정보협력과-561
(2020. 7. 27.)

법 개정 추진계획(안)

(감염예방법 7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행령 제32조의2 제4, 5호 신설)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1, 2, 3 현행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위치정보(신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된 영상정보(신설)

인권 위기의 항구화에 저항

- ❖ 코로나19를 넘어 상시 식별과 상시 자격증명의 사회로?
- ❖ 감염병 위기대응의 인권기반 접근 요구!
- ❖ 제도 개선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20. 4. 2)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 침해적인 감시체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휴대폰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의 디지털 감시 권한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과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또 차별의 위험이 있고 이미 소외된 집단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매우 특수한 시기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것이다.